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43
----------	------

제출연월일: 2021. 05. 03.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종량제 봉투 무게를 감소하여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는 등 폐기물수거원 작업환경 개선
- 나.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 및 신고체계 강화를 위한 포상금 기준 조정

2. 주요내용

가. 100ℓ 종량제봉투 폐지 및 75ℓ 종량제봉투 도입(안 별표 1 ~ 별표 3)

나. 포상금 기준 조정(안 제23조)

- 모든 과태료처분의 경우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지급,
다만 차량을 이용한 불법투기의 경우 부과금액의 80%지급 기준 조정

※ 현재 포상금 지급기준

- 50,000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의 경우에는 포상금 10,000원 지급
- 50,000원 초과 200,000원 미만 과태료처분의 경우에는 포상금 50,000원 지급
- 200,000원 이상 과태료처분의 경우에는 100,000원 지급

다. 변경된 환경미화원 명칭 정비(안 제23조)

- 환경미화원 → 환경공무직

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조문 정비(안 별표 6)

3. 근거법규: 따로 붙임

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나.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68조제3항제1호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14803호(2021. 4. 8.)]

라. 입법예고: 2021. 3. 29. ~ 4. 19.(21일간) /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불법소각·투기 행위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인 (구산하 공무원, 환경공무직,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다)에게는 건별로 각 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모든 과태료처분의 경우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50/100을 지급한다. 다만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투기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80/100을 지급한다.

2. 동일 신고자의 신고건수 합계가 월 5건, 연간 10건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3조(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① <u>구청장은 불법소각·투기 행위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구산하 공무원, 환경미화원,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다)에게는 건당 다음 각 호와 같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에 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고발되었을 때에 한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50,000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의 경우에는 포상금 10,000원 지급</u> 2. <u>50,000원 초과 200,000원 미만 과태료처분의 경우에는 포상금 50,000원 지급</u> 3. <u>200,000원 이상의 과태료처분의 경우에는 포상금 100,000원 지급</u> 4. <u>동일 신고자의 신고건수 합계가 월 5건, 연간 10건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울산</u> 	<p>제23조(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① <u>구청장은 불법소각·투기 행위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광역시 관할구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인 (구산하 공무원, 환경공무직,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다)에게는 건별로 각 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모든 과태료처분의 경우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50/100을 지급한다. 다만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투기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80/100을 지급한다.

2. 동일 신고자의 신고건수 합계가 월 5건, 연간 10건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불법소각·투기행위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를 확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

-----.

[별 지]

[별표 1]

중량제봉투의 용량·용도·색상 및 재질(제13조제2항)

봉투용량	용도	색상	재질
5ℓ	재사용	흰색 (반투명)	폴리에틸렌 (단, 공공용은 폴리프로필렌)
10ℓ	재사용	흰색 (반투명)	
20ℓ	재사용		
50ℓ	일반용	녹색	
75ℓ	일반용		
30ℓ	특수규격 (공사장 생활폐기물)	녹색	폴리프로필렌
50ℓ	특수규격 (공사장 생활폐기물)		

[별표 2]

중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4조제4항)

1. 중량제봉투의 크기

용량(ℓ)	규격(가로cm×세로cm)	비고
5	26×46.5	
10	33×56.5	
20	42×69.5	
30	48×78.5	
50	56×91.5	
75	65×103.5	

[별표 3]

중량제봉투의 공급·판매가격(제15조제1항)

(단위: 원/장)

구분	일반용					특수규격	
	5	10	20	50	75	30	50
용량(ℓ)	5	10	20	50	75	30	50
공급액	146	282	546	1,356	2,020	1,966	3,167
판매수수료	14	28	54	134	200	194	313
판매가격	160	310	600	1,490	2,220	2,160	3,480

[별표 6]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제4호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 신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은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한데 묶음
	○ 상자류(과자,포장 상자, 기타, 골판 지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코팅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류	○ 철캔, 알루미늄 (음·식용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운 후 물로 씻은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등 철제품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은 후 배출
3.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등 쇠붙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어있는 플라스틱, 고무류 등은 제거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양은,스테인류, 전선, 알루미늄새시류)	
4. 병류	○ 음료수병,기타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음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p>※ 제외품목 : 화장품병, 식기등 유백(우유빛)색유리, 거울, 도자기류, 전구, 내열식기류</p>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5. 플라 스틱류 PETE류 (1) HDPE류 (2) LDPE류 (4) PP류(5) PS류(6)	(1) 음료수병, 생 수병, 간장병 등 (2) 샴푸, 세제류 용기, 우유병 등 (4) 우유병, 바디 클렌저 , 샴푸병 (5) 상자류(맥주, 콜라, 소주상자 등), 쓰레기통, 막 걸리병 등 (6) 요구르트병, 아이스크림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씻어서 배출 • 용기의 표면 또는 바닥부분에 표기된 표시 문자 (1-6번)로 구분 • 표시숫자 3번(PVC류) 및 7번(OTHER류)은 제외 <p>※ 수거품목 이외의 플라스틱류는 일반쓰레기 배출 하도록 조치</p>
6. 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품류 ○ 합성섬유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어있는 단추, 지퍼등은 제거 • 물에 젖은 의류는 말리고 이물질이 묻은 의류는 세탁 후 묶어서 배출 <p>※ 카펫, 가죽제품, 일회용기저귀, 솜 등은 제외</p>
7. 스티로폼 (E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상품 완충포장재 ○ 건축자재 ○ 어류, 농수산물 포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않게 함 • 내용물은 비우고 이물질이 묻어있는 것은 물 로 씻어서 말린 후 배출 • 라벨이나 비닐코팅부분은 제거해야 함 • 모든 제품은 묶어서 배출
8. 폐형광 등류	직관형 형광램프 환형(원형)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컴팩트형형광램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피를 제거하고 깨지지 않은 것 • 전용수거함에 배출
9. 기타	○ 1회용 비닐봉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내용물은 비우고,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물로 씻어서 말린 후 배출

<참고자료>

[별표 1]

【현 행】

중량제봉투의 용량·용도·색상 및 재질(제13조제2항)

봉투용량	용도	색상	재질
5ℓ	재사용	흰색 (반투명)	폴리에틸렌 (단, 공공용은 폴리프로필렌)
10ℓ	재사용	흰색 (반투명)	
20ℓ	재사용		
50ℓ	일반용	녹색	
100ℓ	일반용		
30ℓ	특수규격 (공사장 생활폐기물)	녹색	폴리프로필렌
50ℓ	특수규격 (공사장 생활폐기물)		

【개정안】

중량제봉투의 용량·용도·색상 및 재질(제13조제2항)

봉투용량	용도	색상	재질
5ℓ	재사용	흰색 (반투명)	폴리에틸렌 (단, 공공용은 폴리프로필렌)
10ℓ	재사용	흰색 (반투명)	
20ℓ	재사용		
50ℓ	일반용	녹색	
75ℓ	일반용		
30ℓ	특수규격 (공사장 생활폐기물)	녹색	폴리프로필렌
50ℓ	특수규격 (공사장 생활폐기물)		

[별표 2]

【현 행】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4조제4항)

1. 종량제봉투의 크기

용 량(ℓ)	규 격(가로cm×세로cm)	비 고
5	26×46.5	
10	33×56.5	
20	42×69.5	
30	48×78.5	
50	56×91.5	
<u>100</u>	<u>71×113.5</u>	

【개정안】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4조제4항)

1. 종량제봉투의 크기

용 량(ℓ)	규 격(가로cm×세로cm)	비 고
5	26×46.5	
10	33×56.5	
20	42×69.5	
30	48×78.5	
50	56×91.5	
<u>75</u>	<u>65×103.5</u>	

[별표 3]

【현 행】

종량제봉투의 공급·판매가격(제15조제1항)

(단위: 원/장)

구분	일반용					특수규격	
용량(ℓ)	5	10	20	50	<u>100</u>	30	50
공급액	146	282	546	1,356	<u>2,694</u>	1,966	3,167
판매수수료	14	28	54	134	<u>266</u>	194	313
판매가격	160	310	600	1,490	<u>2,960</u>	2,160	3,480

【개정안】

종량제봉투의 공급·판매가격(제15조제1항)

(단위: 원/장)

구분	일반용					특수규격	
용량(ℓ)	5	10	20	50	<u>75</u>	30	50
공급액	146	282	546	1,356	<u>2,020</u>	1,966	3,167
판매수수료	14	28	54	134	<u>200</u>	194	313
판매가격	160	310	600	1,490	<u>2,220</u>	2,160	3,480

[별표 6]

【현 행】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 (제2조제4호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 신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u>젖지않게</u>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코팅포지, 공책의 <u>스프링등은</u>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u>씻은후</u> 펼치거나 압착하여 한데 묶음
	○ 상자류(과자,포장 상자, 기타, 골판 지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코팅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류	○ 철캔, 알루미늄 (음·식용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내용물을 비운 후</u> 물로 씻은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등 철제품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u>씻은후</u> 배출
3.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등 쇠붙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어있는 플라스틱, 고무류 등은 제거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양은,스테인류, 전선, 알루미늄새시류)	
4. 병류	○ 음료수병,기타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음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제외품목 : 화장품병, 식기등 유백(우유빛)색유리, 거울, 도자기류, 전구, 내열식기류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5. 플라 스틱류 PETE류 (1) HDPE류 (2) LDPE류 (4) PP류(5) PS류(6)	(1) 음료수병, 생 수병, 간장병 등 (2) 샴푸, 세제류 용기, 우유병 등 (4) 우유병, <u>바디</u> <u>크린저</u> , 샴푸병 (5) 상자류(맥주, 콜라, 소주상자 등), 쓰레기통, 막 걸리병 등 (6) 요구르트병, 아이스크림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씻어서 배출 • 용기의 표면 또는 바닥부분에 표기된 표시 문자 (1-6번)로 구분 • 표시숫자 3번(PVC류) 및 7번(OTHER류)은 제외 ※ 수거품목 이외의 플라스틱류는 일반쓰레기 배출 하도록 조치
6. 의류	○ 면세품류 ○ 합성섬유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어있는 단추, 지퍼등은 제거 • <u>물에젖은</u> 의류는 말리고 이물질이 묻은 의류는 <u>세탁후</u> 묶어서 배출 ※ 카펫, 가죽제품, 일회용기저귀, 솜 등은 제외
7. <u>스티로폼</u> (EPS)	○ 각종상품 완충포장재 ○ 건축자재 ○ 어류, 농수산물 포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않게 함 • 내용물은 비우고 이물질이 묻어있는 것은 물로 씻어서 <u>말린후</u> 배출 • 라벨이나 비닐코팅부분은 제거해야 함 • 모든 제품은 묶어서 배출
8. 폐형광 등류	직관형 형광램프 환형(원형)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콤팩트형형광램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피를 제거하고 깨지지 않은 것 • 전용수거함에 배출
9. 기타	○ 1회용 비닐봉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내용물은 비우고,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물로 씻어서 말린 후 배출

【개정안】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 (제2조제4호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 신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u>젖지 않게</u>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u>스프링 등은</u>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u>씻은 후</u> 펼치거나 압착하여 한데 묶음
	○ 상자류(과자,포장 상자, 기타, 골판 지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코팅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류	○ 철캔, 알루미늄 (음·식용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내용물</u>을 비운 후 물로 씻은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등 철제품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u>씻은 후</u> 배출
3.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등 쇠붙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어있는 플라스틱, 고무류 등은 제거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양은,스테인류, 전선, 일루미늄새시류)	
4. 병류	○ 음료수병,기타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음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제외품목 : 화장품병, 식기등 유백(우유빛)색유리, 거울, 도자기류, 전구, 내열식기류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5. 플라 스틱류 PETE류 (1) HDPE류 (2) LDPE류 (4) PP류(5) PS류(6)	(1) 음료수병, 생수병, 간장병 등 (2) 샴푸, 세제류 용기, 우유병 등 (4) 우유병, <u>바디클렌저</u> , 샴푸병 (5) 상자류(맥주, 콜라, 소주상자 등), 쓰레기통, 막걸리병 등 (6) 요구르트병, 아이스크림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씻어서 배출 • 용기의 표면 또는 바닥부분에 표기된 표시 문자 (1-6번)로 구분 • 표시숫자 3번(PVC류) 및 7번(OTHER류)은 제외 ※ 수거품목 이외의 플라스틱류는 일반쓰레기 배출 하도록 조치
6. 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품류 ○ 합성섬유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어있는 단추, 지퍼등은 제거 • <u>물에 젖은</u> 의류는 말리고 이물질이 묻은 의류는 <u>세탁 후</u> 묶어서 배출 ※ 카펫, 가죽제품, 일회용기저귀, 솜 등은 제외
7. <u>스티로폼</u> (E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상품 완충포장재 ○ 건축자재 ○ 어류, 농수산물 포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않게 함 • 내용물은 비우고 이물질이 묻어있는 것은 물로 씻어서 <u>말린 후</u> 배출 • 라벨이나 비닐코팅부분은 제거해야 함 • 모든 제품은 묶어서 배출
8. 폐형광 등류	직관형 형광램프 환형(원형)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컴팩트형형광램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피를 제거하고 깨지지 않은 것 • 전용수거함에 배출
9.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비닐봉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내용물은 비우고,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물로 씻어서 말린 후 배출

근 거 법 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제6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호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5	5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신규 도입하는 75리터 중량제봉투 가격을 책정으로 별도의 비용발생이 없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하여 포상금 기준을 조정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작성자

- 소 속: 환경미화과
-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 성 명: 정은숙
- 연락처: (052)290-3762